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8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7.

발 의 자 : 강선영 · 김민전 · 최수진
임종득 · 강대식 · 유용원
김 건 · 서명옥 · 최은석
이달희 · 성일종 · 고동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 중 군용·경찰용·세관용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, 「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고 있음.

그런데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, 현행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새로운 감항증명(항공기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증명하는 것)을 받아야 함.

현실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던 외국산 항공기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설계과정 검사가 곤란하여 퇴역 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, 이에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·산불진화용 항공기가 「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·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받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2항, 제20조제8항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88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가목 중 “구조”를 “구조(국가기관등이 임차한 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예방”을 “예방(국가기관등이 임차한 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항공기”를 “항공기 및 수색·구조업무 또는 산불진화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(국가기관등이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)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제1호 중 “해당”을 “형식증명: 해당”으로, “경우: 형식증명”을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”를 “제한형식증명: 신청인이 산불진화,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(제8항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공기는 제외한다)”로, “경우: 제한형식증명”을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제시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「군용

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「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,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
2. 군용항공기로 20년 이상 운용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,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한형식증명 간주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조된 항공기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형식증명

2.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 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: 제한형식증명

가. 산불진화,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(나목의 항공기를 제외한다)

나. 「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,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

③ ~ ⑦ (생략)

---- 경우

2. 제한형식증명: 신청인이 산불진화,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(제8항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공기는 제외한다)-----

-----경우

<삭 제>

<삭 제>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⑧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제시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「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「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,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
2. 군용항공기로 20년 이상 운용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,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